



## 5. 질의 및 답변

- 문 : 동 기금의 사용을 당분간 하지 않겠다는 것은 언제까지 기금을 조성 하겠다는 것인지
- 답 : 5억원의 기금이 확보되는 2003년부터는 이자수입으로 노인복지기금 목적 사업에 운용할 수 있을 것임.

## 6. 토 론 : 없음

## 7. 심사결과

- 2001. 12. 11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